

# 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선갑 위원장님,  
그리고 선배, 동료 위원님 여러분!  
더불어민주당 박호근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안설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
이미 2011년부터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통합해 운영 중인  
현재 상황을 조례 조문에 반영하고,  
다양한 법률가들에게 분야별 입법 현안에 대해  
빠른 자문을 구하며,  
2008년부터 적용해 온 고문료 체계를 현실화하고자  
제안됐습니다.

□ 구체적으로는

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입법·법률고문으로 통합하고,  
입법·법률고문의 정원을 25명 이내로 하며,  
정액고문료를 월 10만 원으로, 법률자문료를 한 건당  
20만 원으로 각각 하향·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□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,  
아무쪼록 운영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 
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 
감사합니다.